

상속세 신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신고기한 6개월과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2026.08.11. 세무법인 지율 · 손창용 세무사



본 원고는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법적 책임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실제 세무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과 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원고 내용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	핵심 내용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증법 제67조 제1항)
자료 준비 목표	늦어도 2개월 이내 완료. 남은 기간에 재산평가와 공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류 형태	원칙적으로 사본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자료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와 과거 10년 거래내역 (은행별 방문·발급 필요)
가장 자주 누락되는 자료	사전증여 내역,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부채 내역, 병원비 미지급액

이런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대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상속세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긴다고 바로 신고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평가 절차가 필요하고, 금융자료는 은행마다 발급 요건이 달라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 수집이 늦어지면 검토 시간이 사라지고, 그만큼 공제 누락과 신고 오류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실제로 요청드리는 서류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문	규정 내용
상증법 제67조 제1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상증법 제67조 제2항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상증법 제13조	사전증여재산 가산 —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
상증법 제14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필요서류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이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고, 제13조와 제15조가 **과거 5년에서 10년의 이력**을 과세가액에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류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신분·상속관계 서류

서류	비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속개시일 확정의 기초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 확정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속인 전원분
각 상속인의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유언장 사본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 산정에 직결됩니다

2. 상속재산 내역 —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재산 종류	준비할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권리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예금	①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서 ② 상속개시일 기준 과거 10년간 거래내역 — 출력물과 엑셀 파일을 함께 요청
주식	상장주식은 증권사 발행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를 통해 확인
신탁재산	신탁잔액증명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약 시 해약환급금 계산서
퇴직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내역



은행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준비서류를 문의하십시오. 상속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은행마다 다르고, 헛걸음하면 그만큼 신고 준비가 늦어집니다. 거래내역은 출력물과 엑셀 자료를
동시에 요청하셔야 이후 분석 작업이 수월합니다.

3. 채무·공제 관련 자료

항목	준비할 자료
금융부채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잔액증명서 및 부채 발생시점 을 알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 시 임대보증금 현황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함께 준비
임차보증금	전세 거주 시 임차보증금, 개인사업자의 상가 등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병원비 미지급액	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피상속인 카드 사용분 중 상속개시일 이후 결제된 내역
장례비용	지출 내역 — 상조회 관련 경비 포함

채무와 장례비용은 상증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차감받지 못합니다.**

4. 사전증여 및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항목	준비할 자료	관련 조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또는 부채 발생	그 내역 및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	상증법 제15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증여세 신고서 사본	상증법 제13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증여세 신고서 사본	상증법 제13조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알리지 않은 과거 거래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드러나 가산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알려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사업 관련 자료

항목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 회계정보 — 회계 데이터 일체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 신고기한을 먼저 달력에 표시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자료 준비는 늦어도 2개월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은행 방문 전 필요서류를 전화로 확인하고, 거래내역은 출력물과 엑셀을 함께 요청합니다
- ☐ 금융거래내역은 10년치를 받습니다 — 사전증여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 ☐ 과거 증여, 처분재산, 부채는 기억나는 대로 모두 알립니다
- ☐ 병원비 미지급액과 장례비용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둡니다
- ☐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사이트	주소	확인할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6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상속세 집행기준, 예규, 질의회신
홈택스	hometax.go.kr	상속세 신고서 서식, 모의계산, 안심상속 원스톱 연계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상속추정, 채무공제 관련 판결문

📌 맺음말

📁 상속세는 준비 기간이 곧 절세의 폭을 결정합니다. 6개월은 결코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를 완벽히 준비한 후 상담하기보다 신고 자료를 상담과 함께 챙기시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